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 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174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:이병도, 고병국, 권수정, 권순선, 김소양, 김소영, 김제리, 김화숙, 송명화, 송재혁, 여 명, 오한아, 이경선, 이동현, 이성배, 이승미, 이영실, 이준형, 임종국, 전병주, 전석기, 최기찬, 한기영, 황인구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이 에 대한 학생·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.
-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여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을 방지하고, 피해자 지 원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보호체계 운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 (안 제4조).

- 나. 학생 및 교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2. "학생"이란 제1호에 따른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- 3. "디지털 성범죄"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촬영, 동의·비동의적 촬영물 등을 사이버공간 등에 배포하거나 유포·협박 등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울시 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(이하 "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 한다.

-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·교원 교육 사항
- 2.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
- 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
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.
- 제5조(예방 및 대응 교육)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·대응 교육
 - 2.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·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
 -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
 - 2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,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
- 제6조(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)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피해자 보호 교원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지원 사업
 - 2.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사업
 - 3.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
 - 4.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·운영

-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제7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(이하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
 - 2.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
 - 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
 - 4.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
 -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위탁)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- 제9조(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)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 응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- 1.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

- 2.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
- 3.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
- 4.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
- 5.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경찰청, 검찰청, 교육부, 여성가족부,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1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12900000018

미첨부사유서(1호)

요청인: 이병도의원 담당

담 당: 조도형 과장

이정수 팀장

원동아 예산분석관

접 수 일: 2021.01.29.

회 신 일: 2021.02.03.

내용문의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7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① 단, 같은 조례안 제5조(예방 및 대응 교육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 민생활교육과 '성평등'팀의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(디지털성범죄예 방사업, 2021년 사업예산 50,000천원)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 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(붙임 참고)
 - ② 같은 조례안 제6조(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)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'성평등'팀의 스쿨 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지원(2021년 사업예산 550,799 천원), 학교 성희롱·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(2021년 사업예산 109,000천원)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 (불임 참고)
 - ③ 같은 조례안 제9조(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)는 성평등위원회(2021년 사업예산 9,300천원)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대상 아님(붙임 참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7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에 해당]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680,000천원(연평균 136,000천원)
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80,000천원으로 연평균 136,000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은 2021년 경기도 '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' 사업예산(17억원)을 준용하여 서울



시 여성인구(5,112,097명, 출처 :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, 2020년 3/4 분기 기준) 대비 서울시 여학생 수(413,300명, 출처 서울시교육청, 2020.4.1. 기준)를 고려하여 비용을 추계함
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680,000천원(연평균 136,000천원)
 - 총비용 =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 = 68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세입	-	_	-	-	-	_	-
	소계(a)	_	-	_	-	_	-
세출	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 (안제7조)	136,000	136,000	136,000	136,000	136,000	680,000
	소계(b)	136,000	136,000	136,000	136,000	136,000	680,000
	총비용(b-a)	136,000	136,000	136,000	136,000	136,000	680,000

- \bigcirc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 = 680.000천원
 - 산출방식 $\sum_{i=1}^{5}$ (연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설치 운영비용)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 ≒ 136,000천원
- · 경기도에서 성폭력·가정폭력 등 전통적 폭력 외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2월에 개설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사업예산 17억원을 준용하여 서울시 여성인구(5,112,097명) 대비 서울시 여학생 수(413,300명)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함
 - ▶ 1,700,000,000원 × 서울시 여학생수(413,300명)/서울시 여성인구(5,112,097명)
 - = 136,000,000원

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원동아

® 02-2180-7953

e-mail: dongya1@seoul.go.kr

【붙임】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		000413	1
구분	세부사업명	2021년	사업내용
	(세세부사업명)	예산	
제5조(예방 및 대응 교육)	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(디지털성범죄예방사업)	50,000	(디지털성범죄예방사업) - 기간: 2021. 1. ~ 12 내용: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- 소요예산: 50,000천원(안제 5조 해당)
제6조(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)	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	550,799	- 시업의 필요성 : 학교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시안 처리 의 전문성 및 투명 성 확보 - 기간 : 2021. 1. ~ 12. - 내용 :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, 스쿨미투 사안처 리 및 상급심의위원회 운영 등, 사안처리매뉴 얼, 스쿨미투 콘텐츠 개 발 등, 학생 대상 학교 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 죄 예방교육 강사비 지 원 - 소요예산 : 550,799천원(안 제6조 해당)
	학교 성희롱·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	109,000	- 사업의 필요성 : '18년 이후 지속 확 산되고 있는 학교 성희롱·성폭력(스쿨 미투) 근절 및 근 본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기반 마련 및 지원 필요 - 기간 : 2021. 1. ~ 12. - 내용 : 학교 내 중대하고 심각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대응 상담, 전수 조사 및 통합적 사안처리 지원, 학교 공동체 회복

78	세부사업명	2021년	사업내용	
구분	(세세부사업명)	예산		
			지원,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등 사후관리, 서울 시교육청 사안처리 지원 단(성인권시민조사관, 변호사, 전문가 등) 구성 운영 지원, 교육(지원)청 맞춤형 사안처리(상담·조사·심의 등) 자문 컨설팅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·보급,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·고등학교성평등 온라인 교육자료개발 및 배포 - 소요예산 : 109,000천원(안제6조 해당)	
제9조(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)	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(성평등위원회구성운영)	9,300	(성평등위원회구성운영) - 기간: 2021. 1. ~ 12 대상: 제1기 성평등위원회 위원 - 내용: 서울시교육정책 성평등 관점 정책방향 점검 및 체계적 자문 등 - 소요예산: 9,300천원(안제9 해당)	

자료 :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